

사회공헌위원회 규정

제정 2018. 04. 01

개정 2023. 05. 12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회공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투명한 기부금 집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일정 규모(1억원) 이상의 기부금 집행 심의·의결
2. 기타 위원회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대표이사
2. 경영지원담당
3. 전략지원담당
4. 준법지원인
5.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

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 유고 시에는 경영지원담당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장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사회공헌 담당부서 팀장이 담당한다.

제 4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나눈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일 2일전(영업일 기준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④항의 절차없이 회의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다

제 5조(의결 등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·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집행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.
 1.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구호 제공
 2. 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’ 및 ‘근로복지기본법’에 따른 기부

제 6조(위원 아닌 자의 출석)
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 7조(의사록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1. 개최일시, 장소, 출석위원 명단

2. 회의 안건 및 경과 요지

3. 회의 결과 : 필요성과 배경, 기대 효과 및 당사 기여도, 기부처 및 수혜자, 기부 규모 등의 적합도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내용

제 8조(기부금 규모별 심의 기준)

사회공헌활동의 기부금 규모별로 집행을 위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억원 미만 :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 후 집행
2. 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 : 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집행
3. 10억원 이상 : 위원회 선 심의, 이사회 심의·의결 후 집행

제 9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